

CEO
Report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계

2011. 3

최 형 선 · 김 동 겹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 약	1
I. 검토 배경	3
II. 공동계정 도입 이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4
1.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변화	4
2. 공동계정 도입 직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6
III. 공동계정 도입 후 예금보험기금 체계	11
1. 공동계정 도입배경	11
2. 예금보험기금 체계	13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계정 운영 상황	18
IV.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부록	24

요 약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계정의 도입을 추진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각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자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
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I 검토배경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은행연합회 자료인 ‘예금보호법 개정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계정통합 사례가 우리나라와 상이하다고 언급함.

- 영국의 경우 사고발생 시 공동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이 회수될 경우 다시 공동계정으로 반환되나, 우리나라 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음.

- 미국은 은행과 저축대부조합 간 계정을 통합하였는데 이는 은행과 저축대부조합의 경우 위험 수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계정 통합이 가능하였음.

■ 본고에서는 영국의 공동계정 도입 배경, 운영체계 및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함.

Ⅱ 공동계정 도입 이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변화

- 영국은 2001년부터 통합 예금보험기금 체계인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운영함.¹⁾
 - 1982년 2월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예금수취 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호기금(Deposit Protection Fund)을 설립함.
 - 1979년 4월에는 예금수취 금융회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 예금보호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Banking Act)을 제정함.
 - 1975년에는 보험회사 파산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위원회(Policyholders Protection Board)를 설립함.
 - 1988년에는 부실 투자회사 고객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기구(Investors Compensation Scheme)를 설립함.
 - 이외에도 주택공제조합 투자자보호기구(Building Societies Investor Protection Scheme), 우애공제조합보호기구(Friendly Societies Protection Scheme) 등을 도입함.
- 이후 금융권의 겸업화 진전으로 기존의 업권별 감독체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6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을 제정하면서 FSCS를 설립함.

1) FSA(1997), "Consumer compensation", p.9.

- FSMA에 따라 모든 금융서비스업의 규제·감독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 Authority)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예금보험 기금인 FSCS를 설립하여 기존의 다양한 보호기구를 통합함.

〈표 1〉 FSCS 도입이후 금융권별 보호한도

금융업권	보호한도	주요내용
예금	31,700 파운드	• 최초 2,000 파운드 : 100% • 2,000~35,000 파운드 : 90% 보호
투자	48,000 파운드	• 최초 30,000 파운드 : 100% • 30,000~50,000 파운드 : 90% 보호
모기지	48,000 파운드	• 최초 30,000 파운드 : 100% • 30,000~50,000 파운드 : 90% 보호
장기보험 (생명보험, 연금)	무제한	• 최초 2,000 파운드 : 100% • 2,000 파운드 초과 : 90% 보호
손해보험	무제한	• 강제보험 : 100% • 임의보험 : - 최초 2,000 파운드 : 100% - 2,000 파운드 초과 : 90% 보호
보험 자문	무제한	• 강제보험 : 100% • 임의보험 : - 최초 2,000 파운드 : 100% - 2,000 파운드 초과 : 90% 보호

자료 :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4.

2. 공동계정 도입 직전 예금보험기금 체계

가. 보험료 적립체계

■ FSCS의 운영은 사후각출방식(pay as you go)이 원칙이나, 유사시 자금투입의 신속성을 위해 상시준비기금(standing fund)²⁾을 적립함.³⁾

○ FSCS는 금융권별로 분리된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고, 서로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금융회사가 각 계정별로 분담금을 적립함.

- 업권별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 기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운영비용 분담, 업권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업권별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경우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기금 적립 및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

■ FSCS는 보험료를 예금수취기관, 보험, 투자회사, 모기지, 보험중개 등 5개의 하위그룹(sub-scheme)으로 구분하여 부과함.⁴⁾

○ 각 하위그룹은 영업활동 등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납부그룹(contribution group)으로 구분됨.

-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 따라 총 11개의 납부그룹으로 분류하며,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하위그룹에 소속됨.

2) 향후 1년 간 소요가 예상되는 기금을 부도 추이, 부도 건당 보험금 청구·지급 금액, 회수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함.

3)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 pp.9, 36.

_____(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 Feedback on CP86 and 'final' text, p.3.

4)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5.

〈표 2〉 보험료 납부그룹 구분

하위그룹	납부그룹	주요 영업활동 대상
예 금	A1 : 예금	• 예금
보 험	A3 : 손해보험	• 일반보험 계약
	A4 : 생명보험	• 장기보험 계약
투 자	A7 : 펀드매니저	• 자산운영
	A9 : AUT, ACDs Depositories 매니저	• 투자모집기관 설립, 운영 등 • 인가 투자신탁 등
	A10 : 자본거래	• 자기매매업
	A12 : 자문 브로커(고객자산 수탁)	• 대리인으로서 투자거래
	A13 : 자문 브로커(고객자산 미수탁)	• 투자 거래 및 계약체결 등
	A14 : 기업연금 자문회사	• 기업연금 자문업
모기지	A18 : 모기지 자문·알선업자	• 모기지 자문·알선업
보험중개	A19 : 손해보험 중개업자	• 일반 보험중개업

자료 :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5.

■ FSCS의 금융회사별 보험료 부담의 경우 기금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되, 개별 금융권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금융업권에서 부담함.⁵⁾

■ FSCS의 보험료는 경영비용보험료(management expense levy)와 보상비용보험료(compensation costs levy)로 구성됨.⁶⁾

○ 경영비용보험료는 FSCS의 기능 수행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비용(base costs), 특별비용(specific costs), 설립비용(establishment costs) 등으로 구분됨.⁷⁾⁸⁾

5)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 p.29.

6)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4.

7) FSMA의 제223조 3항.

8)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Feedback on CP86 and 'final' text, Annex B 13.2.7-13.2.9.

- 기본비용은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FSCS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 및 감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대상임.
 - 특별비용은 하위계정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FSCS 일반직원에게 대한 급여 및 법적 비용 등을 포함함. 동 비용은 보상금 지급요청 건수 및 채무불이행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발생과 관련이 있는 그룹에만 부과됨.
 - 설립비용은 FSCS 설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대상이며 초기 3년간 부과 가능함.
- 보상비용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FSCS가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비용임.⁹⁾
- FSCS는 기 발생(또는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비용 발생과 관련된 납부그룹의 금융회사에 할당함.

〈표 3〉 FSCS 비용의 종류

구 분		주요내용	분담금 할당 대상
경영비용	기본비용	기구운영을 위한 주요 비용	전 부보금융회사
	특별비용	손실 보상금 산정, 보상업무 처리 등으로 인한 비용	해당 납부그룹 내의 부보금융회사
	설립비용	기구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 부보금융회사
보상비용	보상비용	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해당 납부그룹 내의 부보금융회사

자료 : 예금보호공사(2006),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9)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Feedback on CP86 and 'final' text, Annex B 13.2.11.

나. 보험료 부과시기 및 한도

■ FSCS는 보험료를 과거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보험료 수준과 향후 1년 이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그룹별로 징수함.¹⁰⁾

- 개별 분담률은 하위그룹별로 수입보험료, 펀드규모, 내부통제인수 등 개별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함.
- 기금이 부족 시 예상 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각출 가능함.
 - 연간 업권별 보험료 최고 한도가 예금수취회사는 총 보호예금의 0.3%,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0.8%, 투자회사는 총 4억 파운드임.

〈표 4〉 납부그룹별 보험료 부과 기준 및 한도

하위그룹	납 부 그 룰	부과기준	부과한도
예 금	A1 : 예금수취기관	보호예금	0.3%
보 험	A3 : 손해보험사	순수입보험료	0.8%
	A4 : 생명보험사		
투 자	A7 : 펀드매니저	운영펀드규모	총 £4억
	A9 : 집합투자기구운영·보관회사	총 수입	
	A10 : 자기자본 딜러	거래자 수	
	A12 : 자문 브로커(고객자산 수탁)	내부통제인 수	
	A13 : 자문 브로커(고객자산 미수탁)		
	A14 : 기업금융 자문사		
모기지	A18 : 모기지 자문·알선사	연 수입	0.8%
보험중개	A19 : 손해보험 판매회사		

자료 :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p.5-6.

10)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 Feedback on CP86 and 'final' text, Annex B

■ FSCS는 하위그룹 내에서 초과기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예금 보험료를 해당 회사에 상환하고 있음.¹¹⁾

○ 향후 12개월 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 기금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그룹에 납부 예금 보험료를 상환함.

11) FSA(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p.27(3.78).

Ⅲ 공동계정 도입 후 예금보험기금 체계

1. 공동계정 도입배경¹²⁾

가.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논의

- 2006년부터 영국은 금융시스템의 신뢰 유지와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함.
-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기금체계의 유지(sustainability), 공정한 보험료 부과(fairness), 보험료 변동(volatility)의 최소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새로이 공동계정을 도입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낮추고자 함.
- FSA는 2007년 FSCS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동 개선안은 ① 지속성(durability), ② 공정성(fairness), ③ 유사성(affinity), ④ 상호이익의 관련성(mutual financial interest), ⑤ 감당능력(affordability), ⑥ 변동성(volatility), ⑦ 경제성 및 실용성(economy and practicality)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
-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개정 전 예금보험기금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던 보험료의 중복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함.

12) FSA(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와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참조함.

- 특히 보험료 감당능력 평가는 통계모형을 통해 실시하였고, 이는 2006과 2007년 컨설팅 전문기관인 Oxera의 보고서¹³⁾, FSA 보고서¹⁴⁾ 등에 반영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 계정의 도입을 추진함.¹⁵⁾

■ 동 개선안은 ① 공동계정 도입의 필요성¹⁶⁾, ② FSMA 제213조 5항¹⁷⁾의 해석문제¹⁸⁾ 등으로 인해 시행하기 전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치게 됨.

○ 먼저 일부에서는 예금보험기금체계가 현재까지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공동계정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해 FSA는 아직 별 문제가 없다고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개선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며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다음으로 계정 간 차입(cross-subsidy)을 허용하는 체계로의 개선은 FSMA 제213조 5항의 애매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문제 제기함.

- FSA는 오히려 FSMA 제213조 5항을 근거로 하여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는 부보금융회사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¹⁹⁾

13) Oxera(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Report prepared for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_____(2007), "Fun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Analysis of policy options, Report for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14)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15) _____(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11(2.11).

16) _____(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10(2.6).

17) 원문은 <부록>에 제시함.

18)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11(2.13).

- 또한 FSA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함.²⁰⁾

2. 예금보험기금 체계

가. 보험료 부과대상 분류

■ 보험료 부과대상은 5개의 상위그룹(broad class)과 각 상위 그룹의 하위그룹(sub-class) 등으로 새롭게 분류됨.²¹⁾

○ 상위그룹은 ① 예금(Deposit; Class A), ②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Class B), ③ 생명·연금(Life and Pensions; Class C), ④ 투자(Investment; Class D), ⑤ 가계금융(Home Finance; Class E) 등으로 분류됨.

○ 다음으로 예금을 제외한 상위그룹을 금융회사의 기능에 따라 제조(provision)와 중개(intermediation)라는 하위그룹으로 구분됨.

- 손해보험, 생명·연금, 가계금융의 하위그룹은 제조와 중개로 구분되며 투자그룹은 펀드운용(fund management)²²⁾과 중개로 구분됨.
- 제조에는 각 업권에서 금융상품을 개발·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이 포함되고, 중개에는 투자자문회사(financial adviser)나 브로커(broker) 등 판매나 자문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도 포함됨.

19)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12(2.14~2.17).

20) ____ (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13(2.22).

21) FSA Handbook(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EES Manual Chapter 6, Annex 3

22) 투자는 제조 대신에 펀드운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함.

- 금융상품의 제조와 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제조와 중개에 모두 소속됨.²³⁾

〈표 5〉 상위그룹별 하위그룹의 업무구분

상위그룹	하위그룹	해당업무(legal basis for activity)
예금(A)	-	예금수취, 휴면계좌 관리
손해보험(B)	제조(B1)	손해보험계약 관리 및 이행
	중개(B2)	손해보험계약 자금 취급, 투자, 운용, 성과보조
생명·연금(C)	제조(C1)	생명·연금계약 관리 및 이행
	중개(C2)	생명·연금계약 취급, 투자, 운용, 성과보조
투자(D)	펀드운용(D1)	투자관리, (비)규제대상 집합투자 설치, 거래, 운용 및 정리, 기업 및 개인연금 설치, 거래, 운용 및 정리 등
	중개(D2)	투자상품 판매, 계약, 제공 등
가계금융(E)	제조(E1)	가계금융 거래의 관리 및 경영
	중개(E2)	가계금융 거래 및 상담

자료 : FSA(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EES Manual Chapter 6, Annex 3

나. 보험료 부과기준 및 한도²⁴⁾

- FSCS는 보험료를 여전히 보험사고 시 필요한 자금을 부보금 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사후각출방식을 유지함.²⁵⁾
- 보험료는 보험사고 시 하위계정으로부터 분담금 범위 내에서 각출되어 지급이 이루어지며 자금이 모자랄 경우 상위그룹과 공동계정에서 지원함.²⁶⁾

23)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CP 07-5, p.16.

24) ____ (2007), “FSCS Funding Review”, p.42.

25) 상시준비기금은 개정된 예금보험기금체제에서 폐지됨. : FSCS(2009),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p.12.

26) FSA(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pp.8(2.3)-9(2.2).

- 첫째, 하위그룹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 이내에서 비용을 부담함.
 - 예금은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의 구분이 없으며 이들에 대한 부과한도는 18억 4천만 파운드임.
 - 손해보험의 하위그룹 부담한도는 제조가 7억 7천5백만 파운드이고 중개가 1억 9천5백만 파운드임.
 - 생명·연금의 하위그룹 부담한도는 제조가 6억 9천만 파운드이고 중개가 1억 파운드임.
 - 투자의 하위그룹 부담한도는 펀드운용이 2억 7천만 파운드이고 중개가 1억 파운드임.
 - 가계금융의 하위그룹 부담한도는 제조가 7천만 파운드이고 중개가 6천만 파운드임.
- 둘째, 만약 하위그룹의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일 상위그룹 내 타 하위그룹이 부과한도까지 부담함.
- 셋째, 만약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의 부과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동계정을 통하여 비용을 부담함.
 - 공동계정을 통하여 부실 금융회사 정리비용을 부담할 경우 각 하위그룹별 비용부담은 그들의 보험료 부과한도에 비례함.

〈그림 1〉 개정 후 FSCS의 예금보험기금 체계 및 부과한도

(단위 : 백만 파운드)

공동 계정	공동계정 (총 한도 : 4,030 ¹⁾)								
상위 그룹	예금	손해보험		생명·연금		투자		가계금융	
하위 그룹		제 조	중 개	제 조	중 개	펀드 운용	중 개	제 조	중 개
	1,840	775	195	690	100	270	100	70	60

주 : 1) 가계금융의 제조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각 업권별 한도의 합으로서 이들은 가계 금융 중개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부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7천만 파운드까지 지원한다고 명시함.

자료 : FSCS 홈페이지(www.fscs.org.uk)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각 하위그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tariff base)을 운영함.²⁷⁾

○ 보험료 부과 시 부보금융회사의 영업규모가 반영됨.

■ 먼저 하위그룹 중 손해보험 및 생명·연금의 제조와 투자 및 생명·연금의 중개에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을 변경함.²⁸⁾

○ 손해보험 및 생명·연금 제조의 경우 보험료를 기존의 순수입보험료(net premium income)에 손해보험회사는 총부채(gross technical liabilities)를,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mathematical reserves)을 추가하여 부과함.

27)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CP 07-5, p.39.

28) ____ (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p.10(table2.1).

- 순수입보험료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초래할 수 있는 기 판매 보험계약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신규 보험계약은 적지만 기존 보험계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신규 보험회사보다 적어지는 문제 발생 가능함.²⁹⁾

■ 다음으로 하위그룹 중 생명·연금 중개와 투자의 펀드운용의 보험료 부과대상을 변경함.³⁰⁾

- 보험료 부과 기준을 기존의 내부통제인 수 등에서 연간 수입 (annual eligible income)으로 변경함.

■ 그러나 예금과 하위그룹 중 손해보험 및 가계금융 중개는 기존의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함.³¹⁾

〈표 6〉 개정된 보험료 부과기준

상위그룹	하위그룹	부과기준
예금(A)	-	보호예금
손해보험(B)	제조(B1)	순수입보험료 및 총부채 ¹⁾
	중개(B2)	연간 수입
생명·연금(C)	제조(C1)	순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²⁾
	중개(C2)	연간 수입
투자(D)	펀드운용(D1)	연간 수입
	중개(D2)	연간 수입
가계금융(E)	제조(E1)	FSA 정기수수료(periodic fees)
	중개(E2)	연간 수입

주 : 1) 순수입보험료와 총부채의 비중은 75%와 25%임.

2) 순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비중은 75%와 25%임.

자료 : FSA(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p.10.

FSA Handbook(2010), "Periodic Fees", FEES Manual Chapter 4

_____ (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EES Manual Chapter 6

29)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CP 07-5, p.42.

30) _____ (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pp.9(2.3), 10(table 2.1).

31) _____ (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pp.9(2.3), 10(table 2.1).

다. 회수자금처리³²⁾

■ 파산한 금융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자금은 보험료 공제 (credit) 형식으로 하위그룹이나 상위그룹에게 전달함.³³⁾

○ 보험료를 분담한 금융회사 중 파산 금융회사와 연계성이 낮을수록 회수자금의 혜택을 먼저 받고, 그 규모는 부담한 보험료에 비례함.³⁴⁾

〈표 7〉 회수 자금 상환 순서

보험료 부과순서		회수자금 혜택순서	
1단계	해당 하위그룹	1단계	공동계정
2단계	동일 상위그룹 내 타 하위그룹	2단계	동일 상위그룹 내 타 하위그룹
3단계	공동계정	3단계	해당 하위그룹

자료 :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24
 ____ (2007), "FSCS Funding Review", p.37.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동계정 운영 상황³⁵⁾

■ 영국은 2008년 4월 이후 공동계정을 포함한 새로운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함.

■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FSCS는 2008년 7월 예금보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정부가 100% 지급보증을 하기 시작함.

32)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p.6(1.17), 23 (3.48, 3.49, table 3.1).

33) ____ (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23(3.48).

34) ____ (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p.23(3.49).

35)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와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를 참조함.

■ FSCS는 막대한 보험금을 정부의 보증 하에서 재무성(Treasury)으로부터 부실은행에 약 200억 파운드를 차입하여 지급함.

○ FSCS는 2008년 12월까지 브래드포드&빙리(Bradford & Bingley)에 140억 파운드, 아이스랜드계 은행에 44억 파운드, 런던&스카티쉬(London & Scottish)에 2억 7천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함.

○ 현재 200억 파운드의 약 2%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업권별 분담금에 비례하여 각출하고 있음.

- 이자상환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들은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억 파운드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FSCS는 부보금융회사에 매년 부과하는 보험료를 상향조정³⁶⁾하려고 하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공제조합 (Building Societies)의 반발을 초래함.

○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금융업이 위험한 금융업을 보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논리임.

- 당초의 예금보험 부담이 개별금융회사가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국회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³⁷⁾와 FSCS³⁸⁾는 공

36) 보험료 상향조정 규모 및 방법은 검토가 아직 미정임. :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14.

37)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It is entirely inappropriate that institutions that are recognised as having a safer funding model, indeed have such a funding model enshrined in legisl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depositors, should be required to contribute more to the industry's insurance scheme than competitors with funding models that have failed in the current crisis.

38) _____(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We regard the fact the FSCS charge is not link to the level of risk posed to the financial system by individual institutions, but instead is allocated by share of the retail saving market, as illogical and unfair, producing a disproportionate outcome for the low risk retail funded institutions, particularly building societies.

동계정의 업권별 분담금이 공정하지 못함을 인정함.

- FSA와 FSCS는 현 공동계정 체계 하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업권이 가장 많은 보험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하기 시작함.
- 금융권별로 시스템 위험 가능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그 보고서가 2010년 2월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업권별 리스크를 엄밀하게 감안하여 금융업권 간 예금보험료 부담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 200억 파운드 중 원금손실분으로 예상되는 50억 파운드에 대한 처리방식(예금계정 부담, 공동계정 부담, 공적자금 처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IV 맺음말

■ 영국은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유사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각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그러나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³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⁴⁰⁾

-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 200억 파운드 중 원금손실분인 50억 파운드에 대한 처리방식(예금계정 부담, 공동계정 부담, 공적자금 처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⁴¹⁾

39) 영국은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업권별 보험료가 각 업권별 파산 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는 등 많은 검토를 거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권(특히 building societies)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 보험료 책정과 관련하여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40) Timothy Edmonds(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와 FSA(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를 참조함.

41) 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투입된 보험금 중 원금손실분인 50억 파운드에 대한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공동계정 도입과 관련하여 그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참고문헌

예금보험공사(2006),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FSA(1997), “Consumer compensation”

____(June 1999), “Consumer compensation a further consultation”

____(July 200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Rules”

____(March 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

____(March 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

____(September 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____(September 2001),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

____(March 2006), “FSCS Funding Review”

____(March 2007),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Funding Review”

____(April 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Consultation Paper 08/8

____(November 2008), “FSCS funding - tariff changes : Final rules and feedback to CP08/8” Policy Statement 08/11

____(December 2010), “Periodic Fees”, Fees Manual Chapter 4, Release 108

____(December 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Fees Manual Chapter 6, Release 108

FSCS(2009), “Annual Report and Accounts”

Oxera(March 2006), “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Report prepared for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_____(March 2007), “Fun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Analysis of policy options” Report for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imothy Edmonds(April 2010),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홈페이지(www.fscs.org.uk)

부 록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Section 213

The compensation scheme

- (1) The Authority must by rules establish a scheme for compensating persons in cases where relevant persons are unable, or are likely to be unable, to satisfy claims against them.
- (2) The rules are to be known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but are referred to in this Act as “the compensation scheme”).
- (3) The compensation scheme must, in particular, provide for the scheme manager—
 - (a) to assess and pay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cheme, to claimants in respect of claims made in connection with regulated activities carried on (whether or not with permission) by relevant persons; and
 - (b) to have power to impose levies on authorised persons, or any class of authorised person, for the purpose of meeting its expenses (including in particular expenses incurred, or expected to be incurred, in paying compensation, borrowing or insuring risks).
- (4) The compensation scheme may provide for the scheme manager to have power to impose levies on authorised persons, or any class of authorised person,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cost (whenever incurred) of establishing the scheme.
- (5) In making any provision of the scheme by virtue of subsection (3)(b), the Authority must take account of the desirability of ensuring that the amount of the levies imposed on a particular class of authorised person reflects, so far as practicable, the amount of the claims made, or likely to be made, in respect of that class of person.
- (6) An amount payable to the scheme manager as a result of any provision of the scheme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3)(b) or (4) may be recovered as a debt due to the scheme manager.
- (7) Sections 214 to 217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the scheme but are not to be taken as limiting the power conferred on the Authority by subsection (1).

- (8) In those sections “specified” means specified in the scheme.
- (9) In this Part (except in sections 219, 220 or 224) “relevant person” means a person who was—
- (a) an authorised person at the time the act or omission giving rise to the claim against him took place; or
 - (b) an appointed representative at that time.
- (10) But a person who, at that time—
- (a) qualified for authorisation under Schedule 3, and
 - (b) fell within a prescribed category,
- is not to be regarded as a relevant person in relation to any activities for which he had permission as a result of any provision of, or made under, that Schedule unless he had 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scheme in relation to those activities at that time.

저 자 약 력

최 형 선

University of Iowa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schoi@kiri.or.kr)

김 동 겹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dgkim@kiri.or.kr)

CEO Report 2011-02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운영체제

발 행 일	2011년 3월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3775-9058)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